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13

발의연월일: 2021. 3. 16.

발 의 자 : 양경숙・김홍걸・김종민

이개호 · 임종성 · 임호선

최종유 • 이규민 • 김승원

김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폭등,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

22조제1항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검사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3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

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제22조(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 제22조(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 항)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항) ① -----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 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 항을 준수할 것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의2(검사 등) ① 문화체육 <신 설> 관광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 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 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·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32조(등록취소 등) ① (생 략) 저

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7. (생략)

③ (생 략)

	2	제1	항에	U	-라	검시	<u> </u>	하	<u>는</u>
	공두	무원음	<u> </u>	1 -	권한	을	丑人]하	는
	<u>중</u> 도	E를	기니	기고	0]	를	관계	인	에
	게	내보	여이	: हें	<u> 다.</u>				
4]	323	조(등	록취	소	등)	1	(현	현행	과
	같음	<u>)</u>							
	2								
			•						
	1.	~ 4.	(현	행 3	라 같	날음))		
	4의	2. ×	1243	돈의	2제	1항{	을 위	반	하
	<u></u>	すス	·료틭	= ;	제출	·하지	0	나니	하
	7	1나	허위	로	제	출한	자	또	는
	1	<u></u> 보계	공두	1-원	의	출입	• 겉	감사	를
	<u> </u>	귀부	• 방	해 .	또는	- 기	피한	ス	-
	5.	~ 7.	. (현	행 3	라 같	날음))		

③ (현행과 같음)